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5-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4가합50578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청구의 소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륜
	담당변호사 이길상, 김양지
피 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주영
변 론 종 결	2025. 3. 14.
판 결 선 고	2025. 4. 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1. 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5-12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9. 4.경부터 'C'이라는 상호로 D기관 등에 봉투 등 사무용품을 납품하는 사업을 영위해 오고 있다. 피고는 2014. 10.경 종이, 문구, 잡화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원고와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원고는 D기관을 상대로 D기관 용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인터넷주소 1 생략)을 운영하면서 별지1 목록 기재 각 상품 등을 판매하고 있다. 피고는 마찬가지로 D기관을 상대로 D기관 용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인터넷주소 2 생략)을 운영하면서 별지2 목록 기재 각 상품 등을 판매하고 있거나 판매하였다.

다. 원·피고의 각 온라인 쇼핑몰은 모두 회원가입 시 '소속 D기관'을 검색·선택하고 담당자의 성명을 입력하여 D기관 직원 회원계정을 생성한 다음 로그인을 하여야 접속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 원고의 온라인 쇼핑몰 로그인 화면에는 "※ 초기 1회 회원가입 승인 후, 자유롭게 이용 가능합니다. ※ 개인정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신용카드(개인, 법인) 결제 가능(PayApp)", "회원제로 운영되는 쇼핑몰입니다. 로그인 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의 온라인 쇼핑몰 로그인 화면에도 동일한 기재가 있었다가 현재는 삭제되었다.

라. 원고와 피고는 각자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별지1, 2 목록 기재 각 상품 외에도 유성잉크, 니트릴 장갑, 나일론 장갑, 우레탄 장갑, 면 장갑, 쓰레기봉투, 검정비닐봉투 및 그 밖에 여러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이들 상품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가 각자의 온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5-12

라인 쇼핑몰에 게시한 사진들은 별지4 목록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13, 17, 1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아래와 같은 피고의 각 부정경쟁행위, 영업비밀 침해행위,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해, E기관에 대한 매출 감소에 따른 총 427,192,282원의 손해(E기관에 대한 2014년 매출액 대비 2015년 내지 2023년 매출액 감소분 합계 6,780,829,884원에 경비율 6.3%를 곱한 금액) 및 온라인 쇼핑몰 홈페이지 재개설 비용 16,995,000원의 손해 합계 444,187,282원의 재산적 손해를 입었는바, 그 일부로 9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4. 1. 1.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1)]

가. 원고는 늦어도 2016년경부터는 별지1 목록 기재 각 상품을 직접 제작하여 판매하여 왔는데, 피고는 위 각 상품을 그대로 모방한 별지2 목록 기재 각 상품을 자신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고 있다. 이러한 피고의 행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자목에서 정한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로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부정경쟁방지법 제5조에 따라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의 상품을 그대로 모방한 상품을 판매하고 있고, 그 밖에

1) 원고는 2024. 8. 26. 자 준비서면 9쪽에서 "피고는 원고의 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하면서도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해서 원고가 입은 손해액은 위자료를 제외하고도 총 444,187,282원(427,192,282원 + 16,995,000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원고는 우선 그 일부로 9,000만 원을 청구해둔 상황이며, 세무서 사실조회 등을 통해서 피고의 불법행위 시점을 확정하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액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기재하였는바(원고가 그 후로 청구취지를 확장하지는 않았다), 이를 종합해 보면 원고는 재산적 손해의 배상을 구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5-12

원고가 오랜 시간과 노력을 거쳐 형성한 영업방식, 원고의 온라인 쇼핑몰 홈페이지의 구성 및 회원가입절차, 원고가 상품의 홍보, 판매를 위해 촬영한 각종 상품 사진(별지 4) 등 원고의 사업성과를 무단으로 도용하여 영리행위를 하고 있다. 이러한 피고의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에서 정한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부정경쟁방지법 제5조에 따라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는 가입과 접근이 제한된 원고의 온라인 쇼핑몰에 허락되지 않은 방법으로 접근하여 각 상품의 정보, 회원가입 절차, 마케팅 기법, 그 밖의 사업 노하우 등 별지3 목록 기재 원고의 각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 이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가목에서 정한 '절취, 기망, 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로서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부정경쟁방지법 제11조에 따라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라. 설령 피고의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위 가. 내지 다.항 기재와 같은 피고의 행위는 경쟁자인 원고의 노력과 투자에 편승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얻고 원고의 법률상 보호할 가치 있는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 부정경쟁행위 주장에 관하여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5-12

1) 관련 법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은 부정경쟁행위의 한 유형으로서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모방"이라 함은 타인의 상품의 형태에 의거하여 이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의 상품을 만들어 내는 것을 말하며, 형태에 변경이 있는 경우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의 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변경의 내용·정도, 그 착상의 난이도, 변경에 의한 형태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20044 판결 등 참조).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은 단서에서 타인이 제작한 상품과 동종의 상품(동종의 상품이 없는 경우에는 그 상품과 기능 및 효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을 말한다)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하는 등의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에서 제외하고 있다. 여기에서 동종의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는 동종의 상품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채택되는 형태로서, 상품의 기능·효용을 달성하거나 상품 분야에서 경쟁하기 위하여 채용이 불가피한 형태 또는 동종의 상품이라면 흔히 가지는 개성이 없는 형태 등을 의미한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다216758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을 제4, 6 내지 8, 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E기관는 쇼핑백 등 D기관에서 사용하는 각종 용품과 관련하여 표준규격과 디자인 예시를 제공하고 있는 사실, E기관는 또 자신의 사이트에 심볼마크, 로고, 로고타입, 그리드 시스템 등에 관한 이미지와 상세정보를 공개하고 있는 사실, E기관가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몰에서는 이들을 활용한 여러 업체의 현금봉투, 쇼핑백, 우편봉투,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5-12

각대봉투 등이 거래되고 있는 사실, 이들 상품 이미지 일부는 별지5 목록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설령 피고의 별지2 목록 기재 각 상품이 원고의 별지1 목록 기재 각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애초에 E기관가 자신의 심볼마크나 로고, 사무용품의 규격과 디자인 예시 등을 누구에게나 공개하고 있고,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 외에도 여러 업체들이 이를 활용한 각종 상품을 제작·판매하고 있으며, 그 상품의 특성상 E기관와 거래하는 업체라면 E기관가 공개하고 있는 심볼마크, 로고, 제품규격 등을 활용하여 상품을 제작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해 D기관에 납품되는 우편봉투, 현금봉투, 쇼핑백 등은 업체별로 큰 차이 없이 서로 상당히 유사한 형태를 띠는 것으로 보이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의 별지2 목록 기재 각 상품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 단서 (2)에서 정한 '타인이 제작한 상품과 동종의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를 모방한 상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판매한 피고의 행위는 같은 목 본문에서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소결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 부정경쟁행위 주장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은 그 보호대상인 '성과 등'의 유형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유형물뿐만 아니라 무형물도 이에 포함되고, 종래 지식재산권법에 따라 보호받기 어려웠던 새로운 형태의 결과물도 포함될 수 있다. '성과 등'을 판단할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5-12

때에는 결과물이 갖게 된 명성이나 경제적 가치, 결과물에 화체된 고객흡인력, 해당 사업 분야에서 결과물이 차지하는 비중과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고, 이러한 성과 등이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인지는 권리자가 투입한 투자나 노력의 내용과 정도를 그 성과 등이 속한 산업분야의 관행이나 실태에 비추어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되, 성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침해된 경제적 이익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이른바 공공영역(public domain)에 속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위 조항이 정하는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권리자와 침해자가 경쟁관계에 있거나 가까운 장래에 경쟁관계에 놓일 가능성이 있는지, 권리자가 주장하는 성과 등이 포함된 산업분야의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의 내용과 그 내용이 공정한지, 위와 같은 성과 등이 침해자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의해 시장에서 대체될 수 있는지,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성과 등이 어느 정도 알려졌는지, 수요자나 거래자들의 혼동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대법원 2022. 6. 16. 자 2019마6625 결정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E기관가 자신의 사이트를 통해 심볼마크나 로고, D기관 용품의 규격과 디자인 예시 등을 누구에게나 공개하고 있고, 원고와 피고를 포함한 여러 업체들이 이를 활용하여 우편봉투, 현금봉투, 쇼핑백 등 D기관에 납품할 상품을 대동소이한 형태로 제작·판매하고 있는 이상, 원고가 별지1 목록 기재 각 상품을 판매하여 얻는 경제적 이익은 공공영역(public domain)에 속한다고 볼 여지가 있고, 원고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5-12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별지2 목록 기재 각 상품 판매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나) 원고는, 피고가 D기관 직원만이 가입할 수 있는 원고의 온라인 쇼핑몰에 허용되지 않은 방식으로 접근하여 원고의 영업방식(D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한 폐쇄적인 온라인 쇼핑몰 운영)을 도용하고 원고의 온라인 쇼핑몰 홈페이지의 구성 및 회원가입 절차를 그대로 모방한 행위를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와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원고의 온라인 쇼핑몰이 회원가입 시 '소속 D기관'을 검색·선택하고 담당자의 성명을 입력하여 'D기관 직원' 회원계정을 생성한 다음 로그인을 하여야 접속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기는 하나, 원고의 온라인 쇼핑몰 도메인 주소 자체는 누구에게나 공개되어 있고, 원고가 자신의 온라인 쇼핑몰에 가입한 회원들이 실제로 해당 D기관에 소속된 직원인지 검증할 방법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원고가 전국의 모든 D기관 직원 현황을 파악하고 있을 수는 없으므로 이는 당연한 것이다), ②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온라인 쇼핑몰에 모종의 경로로 접근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접근행위 자체보다는 피고가 원고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어떤 정보를 취득하여 이를 자신의 사업에 어떤 방식으로 활용하였는지가 결국 부정경쟁행위 해당 여부 판단의 핵심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는 별지1 목록 기재 각 상품을 모방한 상품을 판매한 행위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한 점, ③ 한편 제출된 증거만으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5-12

로는 D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한 폐쇄적인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영업방식을 원고가 최초로 도입한 것인지 확인하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설령 원고가 최초로 도입한 것이 맞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영업방식이 원고 외 다른 사람은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로 특별히 독창적인 방식이라거나, 다른 경쟁자가 쉽게 모방하기 힘든 방식이라거나, E기관나 원고의 다른 경쟁자들 사이에 이와 같은 원고의 영업방식이 원고의 성과로 인식되고 있다는 등의 사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는 점, ④ 제출된 증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원고의 온라인 쇼핑몰 사이트 모습만으로는 위 사이트가 단기간에 만들기 어려울 정도의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제작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원고의 온라인 쇼핑몰과 피고의 온라인 쇼핑몰은 디자인, 메뉴 구성, 배너, 상품의 배치, 기능 등에 있어 구체적인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⑤ 그 외에 원고의 온라인 쇼핑몰 회원가입 절차(사이트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계정 생성)는 대다수 온라인 사이트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방식으로서 그 자체로 부정경쟁방지법의 보호대상인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⑥ 비록 피고가 과거 자신의 온라인 쇼핑몰 로그인 화면의 안내문구를 원고의 온라인 쇼핑몰 로그인 화면 안내문구와 정확히 같은 내용으로 기재하여 두었기는 하나, 위 안내문구가 원고의 경쟁자들이 생각하기 어려운 내용이라거나 원고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게다가 현재는 피고의 온라인 쇼핑몰 로그인 화면에서 위 문구가 삭제된 상태로 보인다)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원고는 또한, 피고가 원고의 온라인 쇼핑몰에 게시된 각종 상품 사진(별지4)을 무단으로 사용하였고, 이는 원고의 사진저작물을 도용한 행위로서 부정경쟁행위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5-12

성립한다고도 주장한다. 살피건대,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 각 사진은 단순히 잉크, 비닐봉투, 장갑 등 간단한 개별 상품의 모습을 정면에서 촬영한 것일 뿐이어서, 이를 가리켜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원고의 주장을 '피고가 위 각 사진을 무단으로 복제한 행위는 저작권 침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선해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하고 그 요건으로서 창작성이 요구되므로, 사진저작물의 경우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셔터찬스의 포착, 기타 촬영방법,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어야 그러한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는바(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다44542 판결 등 참조), 위 각 사진이 사진저작물로 보호될 정도로 원고의 개성과 창조성을 드러내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은 마찬가지이다.

3) 소결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영업비밀 침해행위 주장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가)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금지를 구함에 있어서는 법원의 심리와 상대방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그 비밀성을 잃지 않는 한도에서 가능한 한 영업비밀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하고, 어느 정도로 영업비밀을 특정하여야 하는지는 영업비밀로 주장된 개별 정보의 내용과 성질, 관련 분야에서 공지된 정보의 내용, 영업비밀 침해행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5-12

의 구체적 태양과 금지청구의 내용, 영업비밀 보유자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8. 22. 자 2011마1624 결정 등 참조).

나)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이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여기서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는 것은 그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 보유자가 비밀로서 관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당해 정보의 내용이 이미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을 때에는 영업비밀이라고 할 수 없으며,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것은 그 정보의 보유자가 그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그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대법원 2022. 6. 16. 선고 2018도51 판결 등 참조).

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가목 전단에서 말하는 '부정한 수단'은 절취·기망·협박 등 형법상 범죄를 구성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비밀유지의무 위반 또는 그 위반의 유인 등 건전한 거래질서의 유지 내지 공정한 경쟁의 이념에 비추어 위에 열거된 행위에 준하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일체의 행위나 수단을 말한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다12528 판결 등 참조).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5-12

2) 구체적 판단

가) 살피건대, 원고는 피고가 'C에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일체'인 원고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나, 별지3 목록 기재만으로는 피고에 의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원고의 영업비밀이 충분히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원고가 가항 내지 마항으로 이를 세분화하고 있기는 하나, 여전히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일체'(나항 내지 라항) 등 광범위하고 추상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마항에서 '그 밖에 C에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일체'를 들고 있어 사실상 원고의 영업활동에 '유용한'(그 범위는 분명하지 않다)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모든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영업비밀의 내용 및 범위가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

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들고 있는 '각 상품의 정보, 회원가입 절차, 마케팅 기법 등'이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도 부족하다. ① 각 상품 정보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애초에 E기관가 각종 D기관 용품의 표준규격과 디자인 예시, 심볼마크와 로고 등을 제공하고 있고 여러 업체가 이에 따라 D기관 용품을 제작·판매하고 있는 이상,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거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는 원고의 영업비밀로 보기 어렵다. ② 원고의 온라인 쇼핑몰 회원가입 절차(사이트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계정 생성)는 대다수 온라인 사이트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방식이어서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거나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거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는 원고의 영업비밀로 보기 어렵다. ③ 원고가 온라인 쇼핑몰을 회원제로 운영하고 있다는 점은 위 쇼핑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5-12

몰의 도메인 주소에 접속하기만 해도 알 수 있는 것이므로, 원고의 이러한 마케팅 기법 역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는 원고의 영업비밀로 보기 어렵다.

다) 한편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절취, 기망, 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다[앞서 나. 2. 나) ①항에서 살핀 사정 등을 고려할 때, 단순히 원고가 앞서 본 회원제 방식으로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부정한 수단을 사용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3) 소결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민법상 불법행위 주장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려면 그 위법한 행위와 원고가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결과발생의 개연성, 위법행위의 태양 및 피침해이익의 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다10275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원고는, 피고가 2014년에 설립된 후 원고의 E기관에 대한 2015년 내지 2023년의 매출액이 2014년에 비해 합계 6,780,829,884원만큼 감소하였고, 여기에 경비율 6.3%를 곱한 금액인 427,192,282원만큼 매출 감소에 따른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가. 내지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행위가 부정경쟁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한 상황에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5-12

는 원고의 행위를 위법한 행위로 단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앞서 든 증거와 갑 제22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외에도 D기관에 각종 사무용품을 공급하는 여러 업체가 존재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밖에 코로나19 감염병의 유행으로 인한 시장 여건 변화, 우편사무의 전자화에 따른 종이봉투 수요 감소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입은 매출 감소라는 손해와 피고의 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도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온라인 쇼핑몰 홈페이지를 그대로 모방하여 자신의 온라인 쇼핑몰을 개설·운영한 탓에 원고로서는 홈페이지를 다시 개설하여야 했고 여기에 16,995,000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손해를 입었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핀 원고와 피고의 각 온라인 쇼핑몰의 형태와 모습, 두 쇼핑몰이 디자인, 메뉴 구성, 배너, 상품의 배치, 기능 등 측면에서 구체적인 차이가 있는 점, 각 온라인 쇼핑몰에서 취급하는 D기관 용품은 E기관가 제공하는 심볼마크 및 로고, 규격, 디자인 예시 등을 활용하여 제작 가능한 것들로서 실제로 여러 업체가 유사한 형태의 상품을 제작·판매하고 있는 점, 원고의 온라인 쇼핑몰 회원가입절차는 독자적인 보호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행위에 위법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원고의 손해와 피고의 행위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다.

3) 소결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5-12

다.

재판장 판사 정인섭

판사 이주영

판사 홍의선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5-12

별지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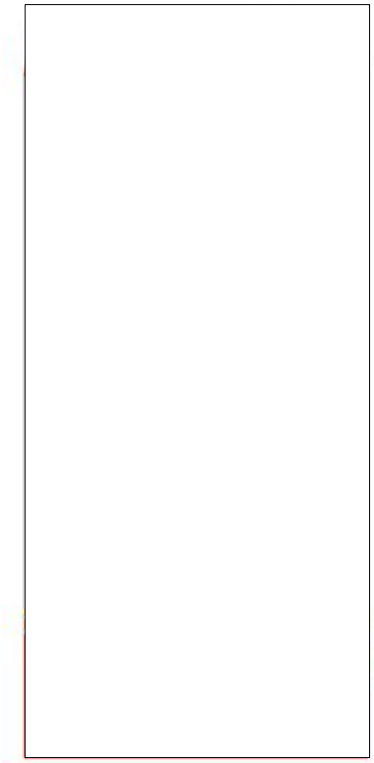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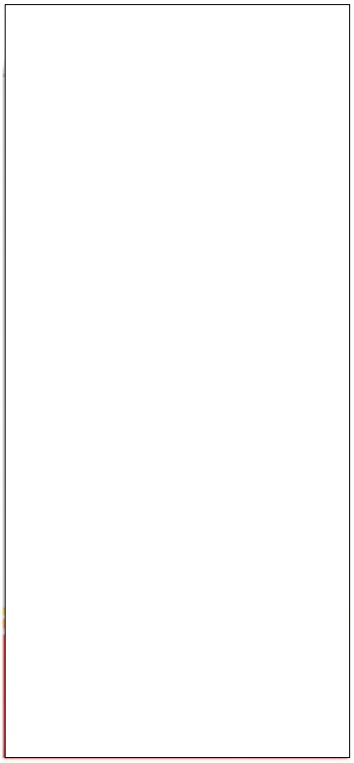
목록(원고 C 상품)

1. 현금봉투 소

가. 상품명 : 현금봉투 소

나. 규격 및 재질 : 9.5cm × 20.5cm, 100g 모조지

다. 상품 사진

상품 사진	비고
 	갑 제4호증의1, 갑 제5호증의1, 갑 제5호증의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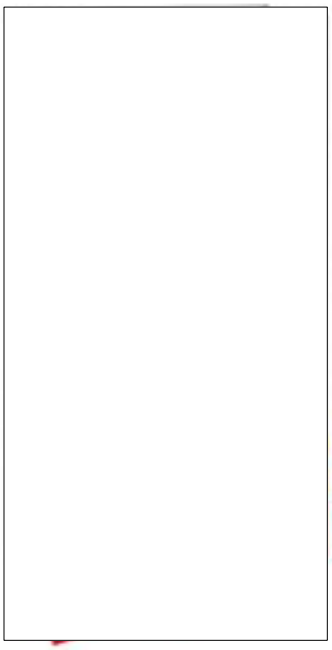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5-12

2. 현금봉투 중

가. 상품명 : 현금봉투 중

나. 규격 및 재질 : 12cm × 24cm, 50g 노루지

다. 상품 사진

상품 사진	비고
	갑 제4호증의1, 갑 제5호증의1, 갑 제5호증의2

3. 쇼핑백

가. 상품명 : 쇼핑백

나. 규격 및 재질

1) 특대 : 34cm × 47.5cm × 16cm, 120g 강광지

2) 대 : 31cm × 42cm × 12.5cm, 120g 강광지

3) 중 : 26cm × 35cm × 9cm, 120g 강광지

4) 소 : 20cm × 28cm × 9cm, 120g 강광지

5) 고급쇼핑백 대 : 31cm × 42cm × 12.5cm, 150g 강광지

6) 고급쇼핑백 중 : 26cm × 35cm × 9cm, 150g 강광지

다. 상품 사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5-12

상품 사진	비고
 일반형	갑 제4호증의1, 갑 제5호증의1
 고급형	갑 제4호증의1, 갑 제5호증의1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5-12

4. 국명인쇄 칼라봉투

가. 상품명 : 칼라봉투 국명인쇄

나. 규격 : 22cm × 10.5cm

다. 상품 사진

상품 사진	비고
	갑 제4호증의2, 갑 제5호증의1

5. 국명인쇄 각대봉투

가. 상품명 : 각대봉투 국명인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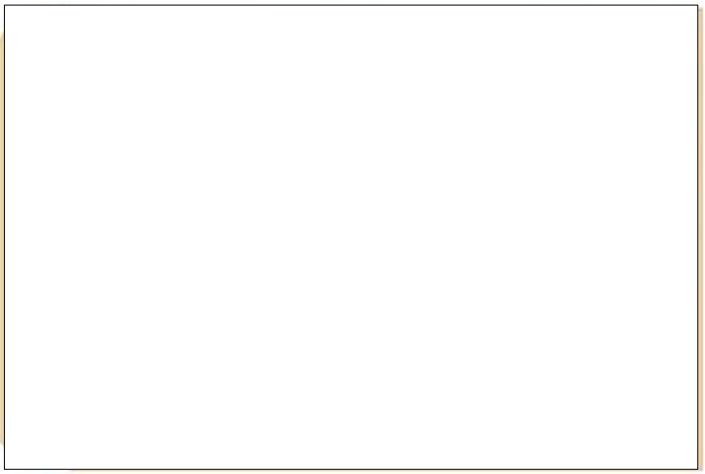
나. 규격

1) 3호 : 25.3cm × 19cm

2) 4호 : 33cm × 24.4cm

다. 상품 사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5-12

상품 사진	비고
 	갑 제4호증의2, 갑 제5호증의1

6. 돋보기안경집

가. 상품명 : 돋보기안경집

나. 규격 및 재질 : 18.5cm × 10.5cm × 8cm, 투명아크릴

다. 상품 사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5-12

상품 사진	비고
	갑 제4호증의2, 갑 제5호증의1

7. 생수컵

가. 상품명 : 생수컵

나. 상품 사진

상품 사진	비고
	갑 제4호증의2, 갑 제5호증의1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5-12

별지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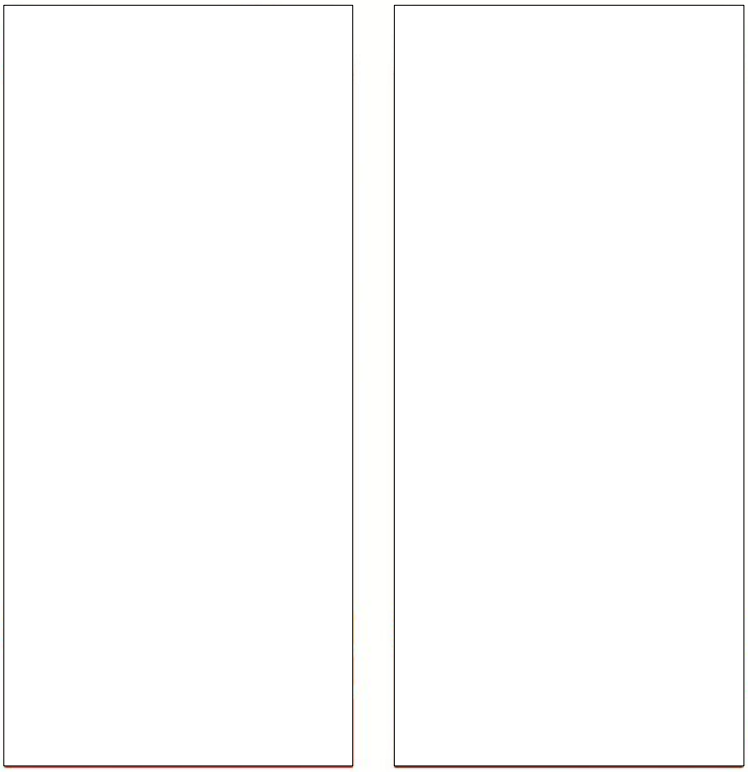
목록(피고 B 상품)

1. 현금봉투 소

가. 상품명 : 현금봉투 소

나. 규격 : 9.5cm × 20.5cm

다. 상품 사진

상품 사진	비고
	갑 제6호증, 갑 제5호증의1, 갑 제5호증의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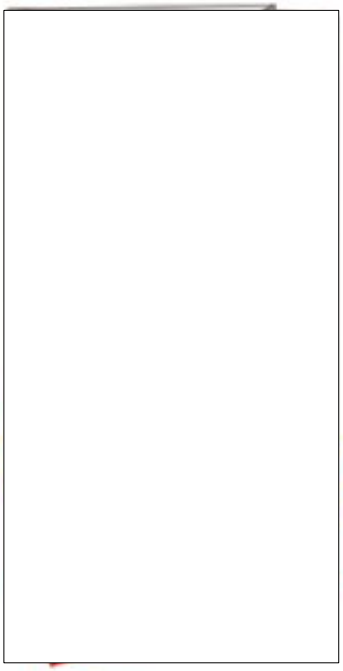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5-12

2. 현금봉투 중

가. 상품명 : 현금봉투 중

나. 규격 : 12cm × 24cm

다. 상품 사진

상품 사진	비고
	갑 제6호증, 갑 제5호증의1, 갑 제5호증의2

3. 쇼핑백

가. 상품명 : 쇼핑백

나. 규격

1) 특대 : 34cm × 47.5cm × 16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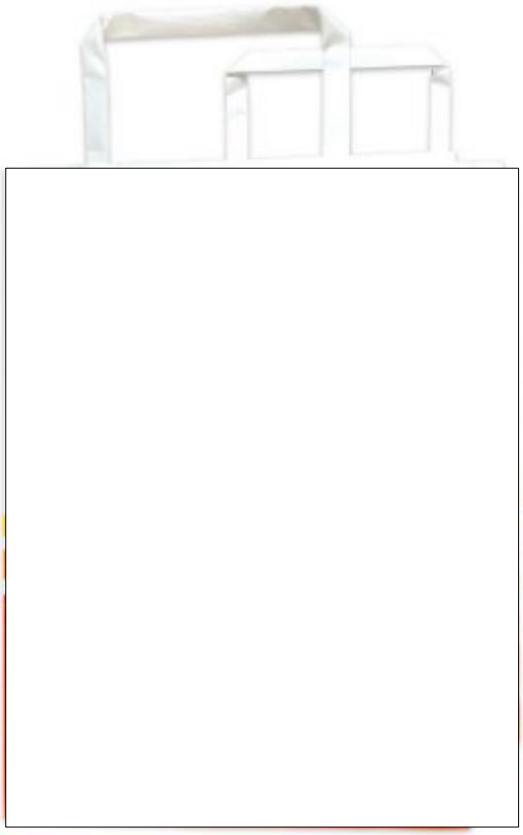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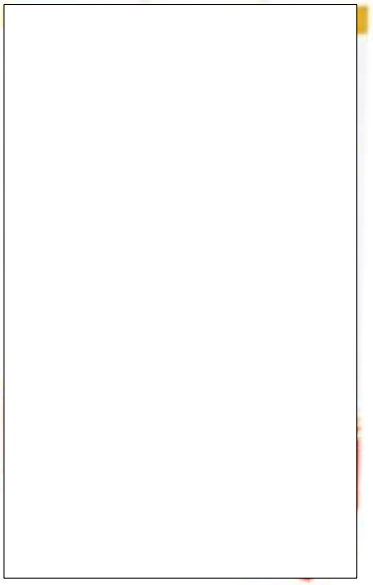
2) 대 : 31cm × 42cm × 12.5cm

3) 중 : 26cm × 35cm × 9cm

4) 소 : 20cm × 28cm × 9cm

다. 상품 사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5-12

상품 사진	비고
	갑 제6호증, 갑 제5호증의1
	갑 제6호증, 갑 제5호증의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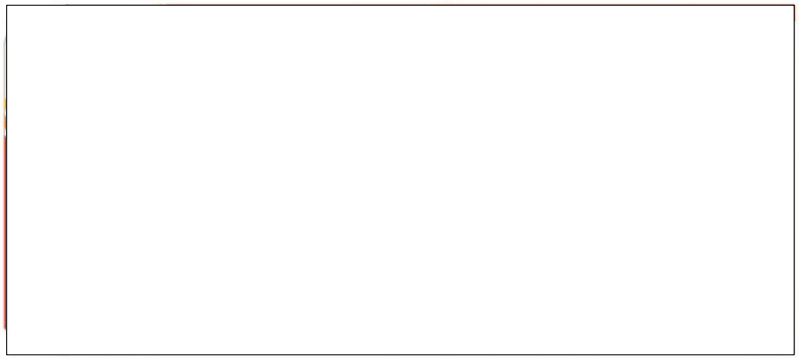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5-12

4. 국명인쇄 칼라봉투

가. 상품명 : 국명인쇄 소봉투

나. 규격 : 22cm × 10.5cm

다. 상품 사진

상품 사진	비고
	갑 제6호증, 갑 제5호증의1

5. 국명인쇄 각대봉투

가. 상품명 : 국명인쇄 A4 각대봉투

나. 상품 사진

상품 사진	비고
	갑 제6호증, 갑 제5호증의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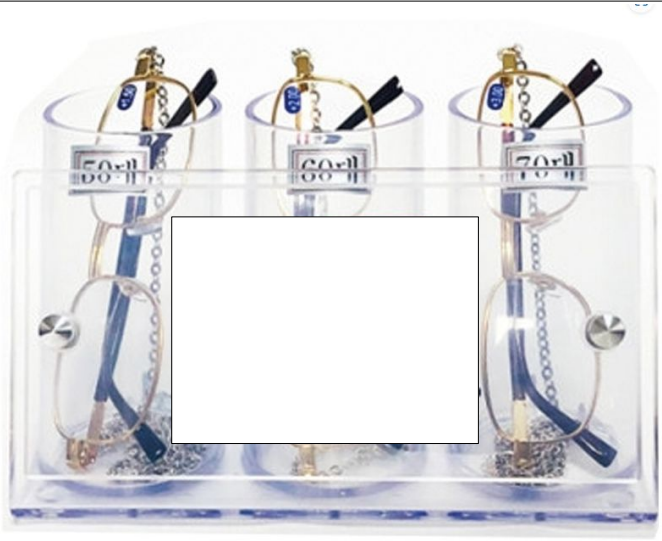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5-12

6. 돋보기안경집

가. 상품명 : 돋보기안경집

나. 규격 : 18.5cm × 10.5cm × 8cm

다. 상품 사진

상품 사진	비고
	갑 제6호증, 갑 제5호증의1

7. 생수컵

가. 상품명 : D기관 종이컵

나. 상품 사진

상품 사진	비고
	갑 제5호증의1, 갑 제17호증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5-12

별지3

목록(영업비밀)

1. C에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일체

가. C의 인터넷 쇼핑몰 운영방식(회원가입, 페이앱 이용 카드결제 방식 등)에 대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일체

나. C의 거래 대상(D기관 직원, 쇼핑몰 회원 등)에 대한 가입, 관리 등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일체

다. C의 카탈로그에 대한 그 제작, 배포 등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일체

라. C의 자체 제작 상품(돋보기 안경집, 종이 생수컵 등)에 대하여 그 제작, 배포 등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일체

마. 그 밖에 C에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일체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5-12

별지4

목록(기타 원·피고의 각종 상품 사진)



- [] -

[] 유성잉크



- [] -

[] 유성잉크



[] 니트릴폼코팅장갑



[] 니트릴폼코팅장갑



[] 쓰레기비닐봉투



[] 쓰레기비닐봉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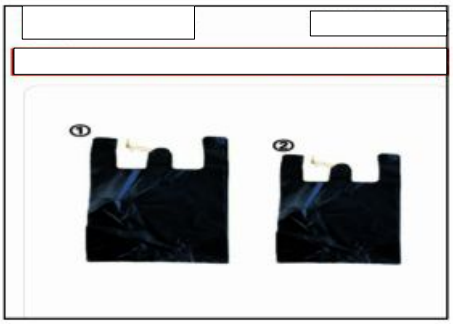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5-12

- [] -



[] 검정비닐

- [] -



[] 검정비닐



[] 나일론도트장갑



[] 나일론도트장갑



[] 팜피트장갑



[] 팜피트장갑

- [] -



[] 면장갑

- [] -



[] 면장갑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5-12

별지5

목록(E기관 온라인몰에 게시된 타사 상품)

현금봉투(소)
현금지급기돈봉투(소) 사이즈9*19 칼라인쇄

상품만족도 96%

상품번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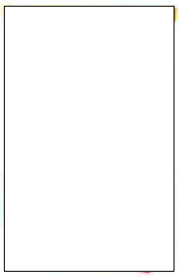


판매가격	40원 (VAT포함)		
결제방법	무통장입금(고정계좌)	판매지역	전국
잔여수량	27,000개	최소주문수량	3000개 (3000개 단위 패키지)
배송수단	[]	배송료	무료배송(판매자부담)
상품종류	패키지상품	면세여부	과세상품
판매종료일	2024-02-29	원산지	국산 ([])

[] 쇼핑백 소
[] 쇼핑백 ㅅ 200*90*280

상품만족도 96%

상품번호 B3815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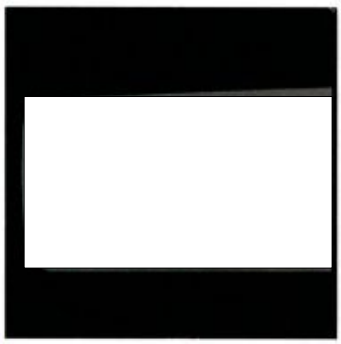


판매가격	140원 (VAT포함)		
결제방법	신용카드 무통장입금(고정계좌)	판매지역	전국
잔여수량	200개	최소주문수량	200개
배송수단	[]	배송료	무료배송(판매자부담)
상품종류	개별상품	면세여부	과세상품
판매종료일	2024-04-03	원산지	국산 []

[]

상품만족도 99%

상품번호 B356672



판매가격	36원 (VAT포함)		
결제방법	무통장입금(고정계좌)	판매지역	전국
잔여수량	693,000개	최소주문수량	3500개 (3500개 단위 패키지)
배송수단	[]	배송료	무료배송(판매자부담)
상품종류	패키지상품	면세여부	과세상품
판매종료일	2024-02-29	원산지	국산 ([])